

서울장학재단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6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자 : 2022년 8월 29일
-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나. 추진근거
- 법 령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양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하여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장학사업
 - 저소득 가정 등록금 및 진로개발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 예체능 분야 우수 고등학생 지원,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글로벌인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지원
 -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지원사업
 - 멘토링, 진로특강, 인문학 특강 등 인재 지원 및 교류 활성화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마. 기관 개요

구분	재단현황
소재지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빌딩)
시설규모	675㎡(이사장실, 사무국장실, 회의실(3), 창고, 사무공간)
조직규모	이사장 등 비상근 임원(13명), 사무국 직원(12명)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소요예산 : 9,968,854천원

○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8,863,997천원, 인건비 602,438천원, 운영경비 450,757천원, 성과급 51,662천원

사. 이사회 회의록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18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있어, 법령에서 정한 출연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하겠음.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 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적용범위) 서울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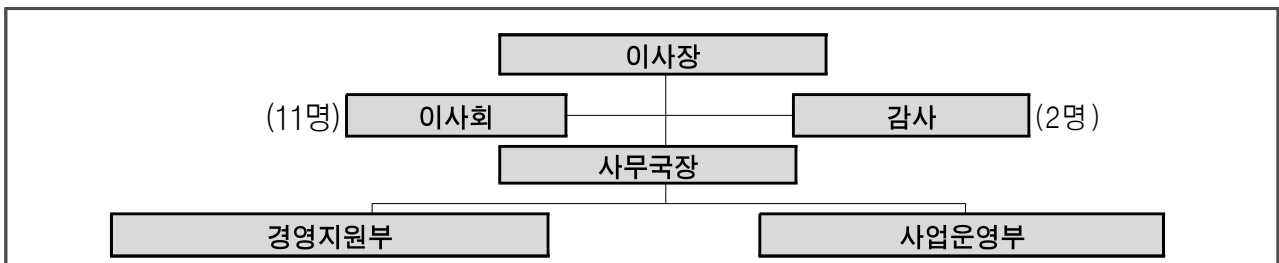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 서울장학재단은 2010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사회(비상임이사 11명, 비상임감사 2명)와 1국 2부의 사무국(정원13명, 현원11명)을 구성하여, 2022년에는 108억원의 예산(출연금 95억원, 운영소득·민간기탁 등 13억원)으로 16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4천 9백여 명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 연혁 〉

- 2008. 5.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 2008. 12.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시교육청)
- 2008. 12.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2009. 1.8./1.13 재단설립등기 / 사업자 등록
- 2010. 3.1 재단 독립운영 개시
- 2012. 3.7 이경희 2대 이사장 취임
- 2014. 7.1 문미란 3대 이사장 취임
- 2015. 3.11 문미란 4대 이사장 취임
- 2018. 9.27 유광상 5대 이사장 취임
- 2022. 4.28. 이석준 6대 이사장 취임

〈 2022년 장학재단의 조직 현황 〉



〈 2022년 서울장학재단의 인력현황 〉

구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원	13	1	1	2	4	5
현원	11	0	1	2	3	4
과부족	△2	△1	-	-	-	△1

〈 2022년 서울장학재단의 시출연금 사업 현황 〉

	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실인원)	지원금액 (연간)	예산 (선발경비포함)	
	장학금명	성격/기부자					
출연금	대학생	대학 (등록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486명	최대 3백만원	30억 9,290만원	
		직업전문학교 (등록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업전문학교 학생	200명	1백만원	2억 110만원	
		진로활동 (학업장려)	학업·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730명	2백만원	14억 7,200만원	
		공익인재 (학업장려)	사회통합형 우수인재	60명	4백만원	2억 9,500만원	
		서울평화희망 (학업장려)	인권증진에 기여한 우수 대학생	10명	2백만원	2,120만원	
		서울우수인재 (학업장려)	전공분야의 재능 및 학업 의지를 가진 대학생	100명	4백만원	4억 1,700만원	
		독립유공자 후손 (학업장려)	독립유공자 4~6대 후손인 대학생	100명	3백만원	3억 600만원	
	고등	고교진로 (학업장려)	학업·진로에 열정있는 저소득 고등학생	1,328명	150만원	19억 9,700만원	
		예체능 (학업장려)	저소득 가정의 예체능 특기 고등학생	150명	3백만원	4억 6,250만원	
		하나고 (학업장려)	사회적 배려 계층 학생	55명	평균 120만원	6,160만원	
		서울꿈길 (학업장려)	저소득 학교 밖 청소년	100명	1,500천원	1억 5,250만원	
	자체사업·민간기탁	대학생	청춘Start (두산)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보육시설 포함)	40명	기존2백만원 신규3백만원	1억 400만원
			유영아학업 (KSEC+운영소득)	성적이 향상된 저소득층 대학생	24명	2백만원	5,085만원
			서울희망디딤돌 (전기출연금+운용소득)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200명	1백만원	2억 190만원
고등		오토꿈이름서울 (오토인더스트리+운영소득)	저소득 특성화 고등학생	30명	2백만원	6,150만원	
		서울희망SOS (서울시설공단)	긴급위기 가정의 초/중/고/대학생	277명	1백만원	2억 7,750만원	

- 2023년 장학재단은 총 99억 6천 8백만원의 예산편성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108억 1천 5백만원) 대비 7.8%(△8억 4천 6백만원) 감액한 수준이고,
 - 사업비는 전년(95억 2천 5백만원) 대비 6.9%(△6억 6천 1백만원) 감액한 87억 8천 5백만원 규모이며, 운영비는 11억 4백만원으로, 전년(10억 7천만원) 대비 3.2%(3천 4백만원) 증액한 수준임.

〈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예산편성(안) 〉

(2022년 7월 기준, 단위: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사업예산 총계	10,815,127	9,968,854	△846,273	△7.8%
장학사업운영 합계	9,525,637	8,785,081	△661,640	△6.9%
교육 기회 보장 장학사업	7,866,509	6,778,249	△1,088,260	△13.8%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	3,355,609	2,368,249	△987,360	△29.4%
학업장려 지원 장학사업	4,031,500	4,410,000	378,500	9.4%
긴급학자금 지원 장학사업	479,400	-	△479,400	△100.0%
우수인재 발굴·지원 장학사업	1,308,050	1,175,000	△133,050	△10.2%
전공역량 지원 장학사업	991,850	554,000	△437,850	△44.1%
공익리더지원 장학사업	316,200	304,000	△12,200	△3.9%
글로벌리더지원 장학사업	0	317,000	317,000	-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62,000	48,000	△14,000	△22.6%
홍보 및 정보화전략시스템 강화	267,533	862,748	595,215	222.5%
전문위원회 운영	21,545	-	△21,545	△100.0%
사무국운영 합계	1,070,905	1,104,857	33,952	3.2%
책임경영시스템 강화	1,070,905	1,104,857	33,952	3.2%
경상운영비	1,070,905	1,104,857	33,952	3.2%
예비비 및 기타	218,585	-	△218,585	△100.0%
예비비	218,585	-	△218,585	△100.0%

출처 : 서울장학재단

나. 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

- 평생교육국은 '저소득 학생들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을 위해'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음.
- 장학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지원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재능·적성 및 소질 개발 지원,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학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다.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검토

- 2022년도에는 출연금 장학사업 11개, 운영소득과 민간기탁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 5개 등 총 16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 2023년도에는 민간기탁의 여부 및 기탁규모가 미확정 상태이며, 2023년 장학재단 예산으로 활용될 2022년도 결산잉여금도 금년 출납폐쇄일(12월 31일) 이후에 확정되어, 본 출연동의안에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12개의 장학사업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3년 장학재단의 출연금 장학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전년(84억 7천 8백만원) 대비 6.2%(△5억 2천 5백만원) 감액한 79억 5천 3백만원으로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편성(안) 〉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장학사업	9,174,559	7,953,249	△1,221,310	△13.3%
출연금	8,478,809	7,953,249	△525,560	△6.2%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61,600	58,240	△3,360	△5.5%
서울희망대학장학금	3,092,909	2,108,909	△984,000	△31.8%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201,100	201,100	0	0.0%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997,000	1,991,000	△6,000	△0.3%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1,472,000	1,969,000	497,000	33.8%
서울꿈길장학금	152,500	150,000	△2,500	△1.6%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306,000	300,000	△6,000	△2.0%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462,500	554,000	91,500	19.8%
서울우수인재장학금	417,000	-	△417,000	100%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95,000	284,000	△11,000	△3.7%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1,200	20,000	△1,200	△5.7%
서울교환학생장학금	0	317,000	317,000	신규
민간기탁+운용소득	695,750	0	△695,750	△100%
청춘Start장학금	104,000	-	△104,000	△100%
서울희망SOS장학금	277,500	-	△277,500	△100%
서울희망디딤돌장학금	201,900	-	△201,900	△100%
오토꿈이름서울장학금	61,500	-	△61,500	△100%
유영아학업장학금	50,850	-	△50,850	△100%

※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비 중 성장지원 사업, 홍보, 정보화사업,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장학사업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1)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신규사업)

- “서울교환학생장학금”은 장학재단의 2023년 신규사업으로,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3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60명에게 연간 4백만원에서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

〈 2023년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신규 편성내역 〉

(단위:천원)

	2022년	2023년(안)	산출내역
서울교환학생장학금	-	317,000	-
장학금	-	307,500	아시아 4,000천원 ×15명 비아시아 5,500천원 ×45명
장학생 선발 관리비	-	9,500	심사운영비 : 5,500천원 사업운영비 : 4,000천원

출처 : 서울장학재단

- 본 장학사업은 2019년까지 ‘공항리무진’의 기탁금으로 운영한 장학사업이나, COVID19의 발생으로 본 장학사업은 2020년 중단되었으며, 예상되는 2023년도 기탁금 규모로는 독립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용할 수 없어, 본 장학사업을 기탁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 교환학생 대부분은 모교에 학비를 납부하고, 통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외국학교에서 수학하여, 등록금 지원보다 생활비의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학업의 편의 제공이 아닌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장학사업을 기부금으로 운영할 때에는 기탁자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도 있으나, 본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학업장려금보다 등록금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장학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환학생 외에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비 유학생의 학비 지원을 우선 고려한 후 자비 유학생 및 교환학생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근접할 것으로 사료됨.
- 장학재단은 기존 장학사업의 규모를 감당하기 힘든 인력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인력 대비 과도한 사업 추진으로 장학사업의 필수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선발의 공정성 저하, 특별한 사정 등의 미반영 등으로 ‘선착순 무료 장학금 자판기’로 전략할 수도 있는바, 인력 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축소 및 ‘학업장려금’의 확대

-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은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장학금으로 전년(30억 9천 2백만원) 대비 31.8%(△9억 8천 4백만원) 감액한 21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3년 서울희망대학장학금 편성내역 >

(단위:천원)

	2022년	2023년(안)	증감액	증감률
서울희망대학장학금	3,092,909	2,108,909	△984,000	△31.8%
장학금	3,086,000	2,102,000	△984,000	△31.8%
장학생 선발 관리비	6,909	6,909	-	0%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은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 및 진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금으로, 전년(14억 7천 2백만원) 대비 33.8%(4억 9천 7백만원) 증액한 19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했으며,

〈 2023년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편성내역 〉

(단위:천원)

	2022년	2023년(안)	증감액	증감률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1,472,000	1,969,000	497,000	33.8%
장학금	1,200,000	1,960,000	760,000	63.3%
장학생 선발 관리비	5,250	9,000	3,750	71.4%

- “서울우수인재장학금”은 전공분야에서 재능과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던 사업으로, 사업성격 및 대상 등이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과 유사하다는 장학재단의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제출하였음.

〈 2023년도 서울우수인재장학금 편성(안) 〉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서울우수인재장학금	417,000	-	△417,000	100%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 이는 한국장학재단의 지속적인 장학사업 확대에 의해 등록금 대부분을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있어, 서울장학재단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 중복 금지’ 규정에 따라 등록금 지원 장학사업은 축소하고, 장학금 중복과 관련이 없는 ‘학업장려금’ 형식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대학장학금은 축소하고, 대학진로장학금은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중복 금지 및 국가장학금의 확대·강화 등 장학사업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 서울 소재 대학의 1년 등록금이 평균 739만원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계획이나 대응방안 없이 점진적으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역효과(장학금은 받고 있으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 등)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장학금의 효과성 유지를 위한 장학재단의 대안마련 후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서울 소재 대학의 1년 등록금 현황 >

서울 소재 42개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 : 739만 3,643원

(단위: 원)

구분	대학명	등록금	구분	대학명	등록금
1	사립 가톨릭대_2캠퍼스	9,262,984	22	사립 한성대	7,741,776
2	사립 연세대	9,152,134	23	사립 상명대	7,711,952
3	사립 추계예술대	8,778,884	24	사립 서울여자대	7,534,577
4	사립 이화여자대	8,689,951	25	사립 동덕여자대	7,422,680
5	사립 한양대	8,499,227	26	사립 서울기독대	7,319,309
6	사립 성균관대	8,397,663	27	사립 한국외국어대	7,129,945
7	사립 홍익대	8,333,478	28	사립 한국성서대	7,111,110
8	사립 고려대	8,279,357	29	사립 덕성여자대	7,105,341
9	사립 건국대	8,275,634	30	사립 강서대	7,104,831
10	사립 숙명여자대	8,075,638	31	사립 경기대_2캠퍼스	7,087,302
11	사립 동국대	7,945,683	32	사립 성공회대	7,047,625
12	사립 서강대	7,944,546	33	사립 서울한영대	6,979,700
13	사립 경희대	7,938,301	34	사립 명지대_2캠퍼스	6,950,358
14	사립 숭실대	7,928,397	35	사립 총신대	6,918,661
15	사립 국민대	7,927,821	36	사립 장로회신학대	6,615,167
16	사립 서경대	7,925,433	37	사립 감리교신학대	6,304,000

	구분	대학명	등록금		구분	대학명	등록금	
17	사립	중앙대	7,907,382		38	사립	가톨릭대_3캠퍼스	6,122,000
18	사립	세종대	7,891,281		39	국립대법인	서울대	6,011,785
19	사립	성신여자대	7,853,794		40	국립	서울과학기술대	5,458,040
20	사립	광운대	7,834,242		41	국립	한국체육대	3,859,657
21	사립	삼육대	7,760,939		42	공립	서울시립대	2,394,440

출처 :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중복지원 금지

- 장학제도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의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략) 전자시스템(중략)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 8. (생략)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복지원 범위 〉

구분	종류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대상기관	대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u>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등</u>
예외사항	① 생활비 무상보조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편, 장학사업은 ‘성적·재능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라는 개념에서 ‘교육권 보호’ 등으로 우리사회의 인식이 확대 또는 전환되고 있고, 무상교육 및 장학제도의 보편화(국가장학금 및 학교자체 장학금의 확대, 지자체·민간 장학재단의 활동 강화 확대 등)에 따라 장학사업은 ‘학비 지원’에서 ‘학업 유지 비용’까지 확대 되고 있어 장학방식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 장학방식의 변경을 위한 장학사업 대상에 대한 명료한 정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연구, 장학방식의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체계와 조직의 재구성 등에 대해 장학재단에서는 구체적인 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학사업 여건변화에 대한 장학재단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 본 장학사업은 공공영역에서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2억 9천 5백만원) 대비 3.7%(1천 1백만원) 감액한 2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3년도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편성(안) 〉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295,000	284,000	△11,000	△3.7%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 ※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관련 서울장학재단에서 제출한 각 자료마다 예산액의 차이가 존재함.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미확정 상태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 상이한 자료는 검토보고서에서 제외함.
- 장학사업은 무대가성, 포상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본 사업은 공익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장학재단의 분류처럼 학업장려금의 성격이 아닌 근로장학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공익성을 가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있는 학생들을 모아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공익인재라고 간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인재양성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로 학업지속 등)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과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의 경우 지원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지원 자격이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과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의 지원대상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
 -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하는 최근 3년 이내 공익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
 - 서울평화희망장학금,
 - 서울지역 대학의 재학생 중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학생으로 서울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4)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 “장학생 성장지원사업”은 장학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장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사업으로 전년(6천 2백만원) 대비 22.6%(1천 4백만원)를 감액한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도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편성(안) 〉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62,000	48,000	△14,000	△22.6%
성장지원사업	62,000	48,000	△14,000	△22.6%
프로그램 사업비	62,000	48,000	△14,000	△22.6%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 대학생 성장지원 사업은 썸토링(멘토-멘티), 썸포터스(서포터즈), 썸틀래스(아카데미), 썸투게터 등으로, 현직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직무·직업·진로 멘토링, 취업역량 강화, 자기개발,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임.
- 최근 장학사업 관련 많은 정책의 변경(대상확대 및 지원강화)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지원 확대·강화’라는 목적 아래 장학생들에게 추가적 지원 방안으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은 장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취업, 취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자기개발, 진로탐색 등을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단정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장학금 지원, 인재육성,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려는 장학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조직 구성원의 결핍 : 상근이사 및 이사장

- 장학재단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재단의 정원관련 규정(「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거쳐 정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규정의 [별표1]정원표는 상근임원 1명을 정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근임원을 두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이미 거친 상태로 보이나, 장학재단은 2017년 이후 5년간 상근임원을 두지 않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임원) ⑥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편 장학재단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장학재단의 조직변경, 직원의 임면(任免),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관리,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기부금) 등 장학재단 운용의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나,
- 통상 이사장 퇴임 후 다음 이사장 취임까지 6개월~7개월 가량 소요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더라도 비상근직으로 공석일 경우가 많아 기부금 확보, 재산운용 등에 대해 책임있는 장학재단 경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장학재단의 경영 책임성 확보, 중·장기적 장학재단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취·퇴임일 〉

	4대 이사장		5대 이사장		6대 이사장
취임일	2015.03.11	공백기간 201일	2018.09.27	공백기간 214일	2022.04.28
퇴임일	2018.03.10		2021.09.26		2025.04.27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2조(이사회)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행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상근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6) 서울장학재단 인력규모의 적정성

- 장학재단은 2017년 상근임원 1명을 포함하여 정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했으나,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서울장학재단의 현원 변경 현황 〉

(단위:명)

구분	계	상근임원	2급	3~4급	5급	6급
정원	13	1	1	2	4	5
2022년 현원	11	0	1	2	3	4
2021년 현원	12	0	1	2	4	5
2020년 현원	11	0	1	2	3	5
2019년 현원	12	0	1	2	4	5
2018년 현원	10	0	1	2	4	3
2017년 현원	7	-	-	1	2	2

출처 : 2018년~2021년 서울장학재단 행감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 재구성

- 각 장학사업의 필수적인 절차는 선발(사업기획, 홍보, 신청 접수, 문의응대), 심사(서류 검토, 서류 면접심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결과발표), 장학금 지급, 사후관리(증서수여식, 역량강화·네트워킹 프로그램, 성장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등이 있으며,
 - 장학재단은 소규모 조직으로 병가, 휴직, 사고 등을 대비한 예비인력도 운영하기 어렵고, 16~18개 사업에 2명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무자 1인당 4~5개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중 1년에 2회 장학생을 선발하는 사업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학재단의 인력 대비 업무량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다양한 분야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 대상 및 사업의 확대 요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업무의 가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장학재단의 사업과 인력변동이 적다는 점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장학사업의 개선·강화·확대 등도 어렵다는 점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동종 장학사업 통합 또는 조직의 확대 등을 통해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서울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장학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절차와 필수적인 업무의 양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장학재단과의 조직·인력·사업 등의 비교는 서울장학재단의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조직-인력-사업 비교 〉

구분		서울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조직구성		1국 2부	4본부 19부 1실
현원/정원		총 13명 상근임원: 없음, 정규직: 12명/13명	총 541명 상근임원: 5명/5명, 정규직: 316명/377명 계약직: 129명/159명
장학사업	사업 수	총 17개 사업	총 20개 사업
	지원학교	고교, 대학, 학교밖청소년, 직업전문학교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학교	839개교 408개 대학, 직업전문학교 42개교, 331개 고교, 대안학교 58개교	2,783개교 대학 408개교 고교 2,374개교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여건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장학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장학사업의 설계·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여력을 확보하는 등 효과적 장학사업을 위한 평생교육국과 장학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시급하고 필요한 만큼 효과성 확보와 유지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장학사업의 설계 후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있으나, 장학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장학재단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사업 등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대상에 따른 효과적 장학방식 선택여부, 장학사업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